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관 상 어 산 업 의 육 성 및 지 원 에
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조승환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법령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,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 권고사항('21.3월)을 이행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행정제재 가중처분 위반차수 적용 기준 마련(안 별표)

-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위반횟수로 위반차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처분 받은 날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하도록 기준 마련

나. 행정제재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 명확화(안 별표)

-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기간을 2년으로 하고, 적발된 날부터 그 이전의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하도록 규정 명확화
- * 기존 가중 적용기간 연수 보다 짧을 수 없고, 그 기간과 같거나 길어야 가중처분 취지 반영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'22.08.08.~09.18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
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“기준”을 “가중된 부과기준”으로, “유형의 위반 행위”를 “위반행위”로 하고,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(종전의 나목)4) 중 “인정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목1)부터 4)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그러하지 아니하다”를 “그렇지 않다”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<u>기준</u>은 최근 1년간 같은 <u>유형의 위반행위</u>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<u>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.</u> <u><신 설></u>	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 1. 일반기준 가. ----- ----- <u>가중된 부과기준</u>----- ----- <u>위반행위</u>----- ----- --. <u>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</u> 나. <u>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.</u>

나.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

다. -----

----- 그러하지
않다.

- 1) -----

- 2) -----

- 3) -----

- 4) -----

----- 인정하는

라. (현행과 같음)

늘려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각
부과금액을 합한 금액을 넘을
수 없으며, 법 제24조제1항에
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
넘을 수 없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683